



METEOR 회칙 (32nd)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① Meteor Youth Volunteer Club(이하 Meteor)은 별뿔별, 즉 유성을 의미한다. 별뿔별을 보며 꿈과 희망을 갖듯, Meteor는 봉사를 통해 다른 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주는 청 소년들의 봉사 동아리이다.

② Meteor, 미티어 두 가지로 불려도 무관하며 필요에 따라 약칭 및 애칭을 정할 수 있다.

▼ 제 2 조 [목적]

- ① Meteor Youth Volunteer Club의 목적은,
-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기타 다양한 단체 봉사활동)
 - 한국의 이미지 제고 (서울 투어 가이드 봉사활동)로 한다.

▼ 제 2 장. 회원

▼ 제 3 조 [자격요건]

- ① Meteor의 대상은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대학생(시니어)이면 누구나 가입하고 활동 할 수 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진행되는 동아리 정기 모임과 시티투어 봉사에 참여 가능한 대학생은 누구나 Meteor 회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 ② Meteor는 학력과 나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편견에 의해 Meteor의 구성원을 선발할 시, 엄벌로 영구 활동권 박탈 및 접근금지에 처한다. (전문대 와 일반대학의 차별을 금한다.)
- ③ Meteor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또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이미 지를 제고시키기를 원하는 모든 대학생을 위한 동아리이며, 학벌이나 점수가 아닌 긍정 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와 영어회화 실력만을 요구한다.

▼ 제 4 조 [회원구분]

다음 각 호는 Meteor의 회원구분 단계에 해당한다.

① 명예회원 (OB METEOR)

Meteor의 모든 커리큘럼을 성실히 이수, 수료한 자

② 정회원 (YB METEOR)

일정한 기수선발모집에서 최종 합격한 자 - 합격 후 최소 6개월(혹은 매 기수 활동기간)간 활동이 가능한 자에 限한다.

② 운영진 (부장 METEOR)

기장단과 각 부서의 부장: 기장, 부기장 (각 1인, 총 2인) / 기획부 (1인) / 홍보부 (1인) / 재무교육부 (1인) / 관리부(1인)

※ 25기부터 재무교육부 차장 2인으로 총 3명 (차장 - 재무차장, 교육차장 각 1인)

▶ 제 3 장. 동아리 운영방침

▼ 제 5 조 [활동권 박탈]

- ① 첫 달 3회 **필참 기간**에 불참할 시
(필참 활동 3회 - OT, 부서별 인수인계, 1차 정기회의) 활동에 불참하거나, 활동 취소를 선언한 자
- ② 활동 도중에 사유 없이 활동 취소를 선언한 경우
- ③ 활동 도중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만두게 된 자.
- ④ 각종 벌금을 한 달 이상 미납한 자.
- ⑤ 운영진 판단 하에 METEOR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자.

※ 본래 총 8 번의 활동모임(총 16 주 중, 시험기간 3 주 제외) 중 3 회 이상 결석 시 활동권을 박탈하였으나, 25 기부터 본 조항을 삭제한다.

- 8 번의 활동모임: OT 1 회, 인수인계 1 회, 정기회의 6 회
- 변경된 사항은 ‘제 4 장 15 조 [Penalty] - 결석’

▼ 제 6 조 [출결 관련 - 구체적인 사항]

① 각 기수 첫 달 3 회 필참 기간 - 결석 시, Meteor 활동권을 박탈한다.

(1 주 : OT & 부서 소개, 신입 기수 자기소개, 부서결정 / 2 주 : 부서별 인수인계 / 3 주 : 1 차 정기회의)

② 해당 기수 회비는 50,000 원이다. 3 회 필참 기간 이후 회비는 반환 불가하다.

수료증은 가입한 달을 포함하여 7 개월간의 전체 임기 기간 동안 성실히 참여하여 활동 의무사항을 준수하였을 경우에만 수여한다. (매년 2 월, 8 월 활동증명서 발급)

③ 임기를 마친 회원들은 다음의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수 활동기간 중 제 5 조의 사항에 위반하지 않고 수료를 충족 한 인원에게 한해, 다음 기수를 연임하여 운영진/부원으로 활동한다 - 수료증을 받고, 동문으로 남아 Meteor 의 활동을 지원한다. (OB)

▼ 제 7 조 [활동권 박탈 통보]

① 운영진은 자격정지나 활동권 박탈에 해당하는 동아리 구성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통 보해주어야 한다.

② 운영진은 자격정지나 활동권 박탈 조건에 임박한 동아리 구성원에게 사전에 경고를 해줘야 한다.

▼ 제 8 조 [활동인원 및 기간]

- ① 각 기수는 운영진 판단 하에 35 명 내외를 기준으로 신입 인원을 선발하여 운영하며, 각 기수별 연임 인원은 수료자에 한하여 5 명 내외로 하되, 기장단 판단 하에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다.
- ② 각 기수 별 의무 활동기간은 6 개월로 한다.
- ③ 선 기수는 3 월부터 8 월까지, 후 기수는 9 월부터 2 월까지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9 조 [동아리 재정운용]

- ① 회비는 기수 시작 시에 지불하며 50,000 원으로 정한다. 회비는 3 회 기간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이 불가하다. 이는 입회금 원칙에 준수하며, 동아리원으로서 존중된 서약의 의미가 있다.
- ② 회비로 구성된 동아리 재정운용금은 동아리 활동 및 부수적 활동에 사용된다.
- ③ MT 비, 기타 부수적인 공식 활동 및 친목도모 활동에 있어서 동아리재정금의 활용은 기장단과 재교부장의 승인이 있을 시에만 인정된다.
- ④ 동아리 재정 운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기장단과 재교부장이 매 정기회의의 때 마다 공개를 한다

▼ 제 4 장. 동아리 활동

▼ 제 10 조 [외국인 투어관리]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투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① 투어 봉사는 1 기수에 5 회 이상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투어 5 회 참가가 수료 기준이지만, 대체활동으로 인정되는 미티어 활동을 통해 투어 횟수를 보충하여 수료할 수 있다. / 단, 투어 참여 횟수는 3 회 이상을 필수로 한다.
 - 투어봉사는 3 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에만 횟수를 인정해준다.
 - 투어리스트의 과실로 취소된 투어의 횟수는 인정해준다.
 - 투어리스트가 당일 취소 통보
 - 연락 없이 30 분 이상 늦을 시, 가이드 판단 하에 해당 투어를 취소할 수 있다.
 - 정기회의와 투어가 겹칠 시, 회의를 우선으로 한다. 회의 불참사유에 투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OB 역시 투어에 참여할 수 있으나, 본 기수의 투어 참여 독려를 위해 OB는 1달에 1번만 참여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의 기준이 부원당 횟수가 아니다. 예를 들어, OB 중 한 명이 3월에 투어에 참여했을 시 다른 OB는 3월 참여가 불가하다.)

▼ 제 11 조 [기타 활동]

① 단체 활동, 기타 이벤트적 활동은 회원들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한다.

② 각 기수 별로 홈커밍데이를 진행한다

상황에 따라 홈커밍데이의 취소도 가능하다. 20~24기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진행하지 않음

▼ 제 12 조 [Penalty]

① 결석

- 모임 출석

① 모임에 출석하려면 적어도 모임 전날 자정까지는 출결게시판에 참석여부를 알리고, 불참할 시에는 불참 사유를 함께 남기도록 한다.

② 회의 당일 출결이 바뀔 경우에는 재교부장에게 먼저 알린 후 카페에 출결 수정 및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이 역시 토요일 밤 11:59 분까지로 따른다. 사유가 인정되는 불참일 시 따로 벌금을 징수하지 않음

1. 불참 사유를 사전에 작성하였으나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8000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불참을 당일 통보하거나 불참 사유를 미작성한 경우, 15000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불참 예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이 면제되며, 회의 당일 밤 11:59 까지 재교부장에게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치료 시(병원 진단서 또는 영수 필요)

② 학교 시험, 공인 시험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주요 시험 전날이 정기회의 날이면 예외사유 인정)

③ 친인척 경조사(결혼식 및 장례식)에 해당하는 경우

- 조퇴

- ① 조퇴할 시에는 조퇴 사유를 함께 남기도록 한다.
- ② 위를 필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조퇴가 인정된다.

- ② 지각

- 모임에 지각할 시 10 분 단위로 1,000 원씩 부과한다. (예시 : 16 시 회의시작인 경우 16 시 10 분까지는 면제, 16 시 11 분부터 벌금부과)
- 사유 없이 전체 회의 시간의 1/2 이상 지각할 시, 결석으로 간주한다.(예시 : 16 시 31 분부터 결석으로 간주)
- 예고 지각할 시에는 사전에(23:59 까지) 공지한다.

- ③ 미게시

- 출결 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않고 출석한 경우 3,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 기획부 공지게시판에 회의 3 일 전까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지 않을 경우, 기획부 인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3,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 Meteor 블로그에 행사 후, 3 일 내에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을 시, 홍보부 인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3,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정기회의 후 회의록(관리부 작성)을 Meteor 전체 회의록 게시판에 3 일내에 공지하지 않을 시, 관리부 인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3,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정기회의 후, 3 일 내(월요일까지)에 벌금 내역을 공지하지 않을 시, 재교부 인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3,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 투어 후기 작성과 투어 후기 홈 (구글폼)이 1 주일 이상 지연될 시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재교부 차장이 관리하도록 한다.
(투어일 포함하여) 7~13 일-3000 원, 14~20 일-6000 원, 21 일~27 일-9000 원
예를 들어) 2/14 일에 투어를 진행했을 시, 2/19 일까지 후기를 마무리하여야 벌금 면제가 되며 2/20 일부터는 투어일 포함하여 7 일째가 되므로 벌금이 부과된다.

- ④ 납부

- 벌금은 재교부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출결 및 댓글 담당자'는 벌금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벌금 납부자들은 해당되는 벌금을 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날 경우 일주일마다 배수로 벌금이 발생한다. 벌금 납부기한은 벌금 공지일을 포함하여 일주일까지이다. (예 : 토요일 회의 후 화요일까지 게시글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 수요일에 납부공지를 하고 대상자는 다음주 화요일 자정까지 납부 완료해야 한다)
- 벌금을 한 달 이상 미납부시 활동권 박탈의 사유에 해당된다.
- 기장단이 불시에 벌금 현황을 확인 후 벌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을 시, 미징수된 금액을 걷고 벌금 담당자도 패널티(담당자에게 벌금 3천원) 부과된다.

▼ 제 5 장. 부서/조직

▼ 제 13 조 [운영진 선출]

- ① 기장단을 제외한 운영진은 각 부서에서 투표를 통해 동등하게 선출한다.
- ② 투표 당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최종적으로 운영진이 선출된다.

▼ 제 16 조의 2 [투표권]

- ① 투표권은 해당 기수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어진다. 단, 투표권은 투표 당일 회의 참석 시 행사할 수 있다.

▼ 제 14 조 [기장단]

기장단은 기장과 부기장으로 구성한다.

① 기장

- 기장은 동아리 운영의 총체적 관리 권한을 지니며,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 각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동아리 운영을 원활히 하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 동아리 사무의 권한 위임을 통해 각 부서에 적절한 업무배정과 부서간 관계 조정을 통해 동아리 운영에 심혈을 기울인다.

② 부기장

- 부기장은 기장을 도와 동아리 운영에 부수적인 관리를 맡는다.
- 기장 부재 시 기장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기장의 권한은 부기장에게 전권 위임한다.

- 부서장과의 협의와 조정에 주업을 두며, 철저한 동아리 구성원 관리에 심혈을 기울인다.

③ 운영진

- 운영진은 기장단과 각 부서의 부장들로 구성된다. (부장이 참가 불가능한 경우, 차장 이 권한을 위임 받아 참석한다.)
- 기장단을 제외한 운영진은 기장단을 도와 부원들이 주도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영진은 온·오프라인으로 꾸준히 연락하여, 각 부서 업무 진행사항을 공유하도록 한다.

▼ 제 15 조 [기획부]

- ① 정기회의 및 기타 모임 장소 섭외, 홈커밍데이, MT, 소풍 등 동아리행사 기획, 기타 연계사무를 본업으로 한다.
- ② 중대한 동아리 사안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구체적 활동사항에 틀을 제 공해야 한다.
- ③ 기획부는 적어도 회의 3일 전(수요일)까지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공지해서 동아 리 회원들의 편의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기획부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3,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 16 조 [홍보부]

- ① 동아리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클럽관리, 동아리를 홍보하고 차후에 있을 차기수 모집을 주도한다.
- ② 다양한 PR 홍보 전략을 구상하여 동아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홍보부는 회의 및 행사 시 사진, 동영상 등을 찍고, 블로그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게시는 행사 후, 3일 내에 완료한다. 이를 어길 시, 홍보부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3,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 ④ 홍보부는 각종 동아리 후원 사업에 지원 시,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홍보물을 제작한다.

▼ 제 17 조 [재정/교육부]

- ①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결정하고 활동기간 중의 동아리 재정의 입출금 및 결산 을 담당한다. 동아리 행사에 필요한 재정은 관련 부서가 재교부장, 기장단과의 협의를 통해 지출하며, 최종 권한은 재교부장에게 있다.
- ② 각 회원은 재교부장에게 동아리 관련 지출의 승인을 받은 후 재정을 사용하도록 하며, 영수증을 필히 제출하여 확인 받도록 한다.

- ③ 재교부에서는 ‘출결 및 댓글 담당자’를 선발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지각 및 결석, 댓글 을 체크하여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한다.
- ④ 재교부는 ‘영어로 진행되는 베스트 투어 발표’(미투미투)와 ‘영어로 진행되는 스터디를 진행한다.

▼ 제 18 조 [관리부]

- ① 관리부는 외국인 투어 담당업무에 신의성실을 다하도록 한다.
- ② 외국인과의 연결 업무
 - Q&A 관리 : 외국인들의 투어관련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담당한다.
 - DB 관리 : 투어를 받은 외국인들의 DB 와 Meteor 의 DB 를 담당한다.
 - 투어게시판 담당 : 투어 게시판 담당자는 외국인들이 보낸 메일을 클럽에 게시하도록 한다. OB 도 한달에 한 번 컨택과 ‘가능’ 댓글을 통해 투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14 기까지 있었던 동문투어를 대신한다. 단, 한 팀당 OB 회원은 최대 2 명으로 제한한다.
 - 만족도 조사서 관리 : 투어가 끝난 후 외국인들에게 받은 투어 만족도 조사서의 관 리를 담당한다. 또한 익명 조사서를 만들어 미티어 단체의 개선점을 알아내어 활동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관리부에서는 Meteor 외국인 공용 SNS 계정을 담당하여 활성화시킨다.
- ④ 매 정기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3 일내에 Meteor 전체 회의록 게시판에 공지하 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관리부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3,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 19 조 [신의성실]

- ① 모든 부서의 부장과 부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한다.
- ② 뒤풀이 및 친목도모 행사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참석하도록 한다.
- ③ Youtube 채널 기획은 홍보부 주도하에, 모든 인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 ④ 각종 Meteor 계정 관리에 모든 인원이 적극 참여하도록